

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 시험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1인당 2,000원" 을 "1인당 20,000원" 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생략	제1조(목적) 현행과 같음
제2조(수수료 징수) 충청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2,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징수한다.	제2조(수수료 징수) . 1인당 20,000원의
제3조 생략	제3조 현행과 같음
	부 칙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